

공공 처분

컬럼비아구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고, 시신이 수석 법의관실(Office of the Chief Medical Examiner, OCME)에 접수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가족이나 친구가 시신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OCME는 화장을 준비합니다. 이를 '공공 처분'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보통 가을(토요일)에 OCME는 시신이 인도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추도식을 열고 이들의 유해(‘유골’)을 지역 공동 묘지에 매장합니다. 추도식에는 가족, 친구, 일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연례 추도식을 진행하기 전에 OCME에 연락하여 유골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OCME 공동 묘지에 매장한 유골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공 처분 절차를 통해 유골이 저희 시설에서 처분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고인의 유해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1. 유해를 인도하려는 개인은 자기앞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485를 컬럼비아구에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기앞 수표 또는 우편환은 DC 재무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3. 유해를 인도하려는 개인은 자기앞 수표 또는 우편환을 미국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 수석 법의관실로 전달해야 합니다.
4. 대금 및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면 수석 법의관실에서 개인에게 승인서와 청구서를 드립니다.
5. 승인서와 청구서를 받은 후 개인은 계약된 장례식장(승인서에 기재됨)에 연락하여 유골 수거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6. OCME와 계약된 장례식장은 사망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망 증명서는 다음 DC 보건부의 필수 기록 부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Vital Records
DC Department of Health
899 North Capital Street, NE
Washington, DC 20002
(202) 442-9303
<https://dchealth.dc.gov/service/death-certificates>